

<음성확인서 FAQ 관련 주요 개정사항, '22. 2. 14.>

구분	기존	개정	사유
음성확인서 미제출(7일 미만 포함) 내국인 조치	시설에서 5일(비용 자부담) + 자가에서 5일 격리	시설에서 5일(비용 자부담) + 자가에서 2일 격리	해외입국자 격리기간 조정(10일 → 7일)에 따른 조치 변경(2.4~)
우크라이나 환 내국인 등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조치 (내국인,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·직계존비속)	음성확인서 제출 대상	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※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 격리 실시	우크라이나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한 외교부 재외국민번호과 요청 반영(2.12~) *재외국민번호과-3765호(22.2.12.)

해외입국자 'PCR 음성확인서' 제출관련 FAQ

<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, 2022. 2. 14.(월)>

1.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"PCR 음성확인서"도 인정되는지?

- "PCR 음성확인서"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
- 단,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(번역인증문)를 함께 제출해야 함
 - *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. 공인번역사무소(공인번역가 포함) 번역본은 인증 불요
 - *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외 항목이 현지어도 인정 가능

2. "PCR 음성확인서"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?

- 유전자 증폭 검출(NAATs, 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.
 - 항원(Antigen, AG, Ag) · 항체(Antibody) 검출검사(RAT, ELISA 등)와 검체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

3. "PCR 음성확인서"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

-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제출
 - * (예시) '22.1.21. 10:00 출발한 경우에는 22.1.19.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(2일)

구분	세부기준
입국일이 '22.1.20. 이후인 경우	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한 음성확인서 * 검사 및 발급일 모두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이내인 경우에만 인정

* 항만 입국자는 입국날짜 관계없이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적용(현행 유지)

4.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(인후도말검사) 외에 SALIVA TEST(타액 검사)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?

- 검체 채취 방식*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-PCR(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반응)검사인 경우라면,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
- 그 외 검사기관,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조건5번 절의 참고은 준수
- * 단, 검사방법과 상관없이 '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'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
5. "PCR 음성확인서"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?

- 성명(여권 기재내용과 동일-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등록번호 생략 가능), 생년월일(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), 검사방법*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 등
- * NAATs, PCR, LAMP, TMA, SDA 등

6. 'PCR 음성확인서'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?

- 병원 이메일,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(본인 입증 책임)

7.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"PCR 음성확인서" 만 인정되는지?

-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*(필리핀, 우즈벡)에서 출발한 내·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'PCR 음성확인서'에 한하여 인정
- *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/ 질병관리청 홈페이지,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
- 이외 국가는,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면 모두 인정

- 2 -

8. "PCR 음성확인서"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,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?

-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본으로 제출하여야 함
- 다만, 입국 후 사후제출(출력 필요)도 인정하고 있으나, 제출 등 보완시까지 공항 대기 또는 시설에서 격리(비용 자부담) 가능
- * 정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 공항대기 불가하여 시설에서 격리해야함(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)

9.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'PCR 음성확인서'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?

-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
→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, B국가 모두 발급 가능
→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, B국가에서 발급 원칙
- * 다만, A국가에서 'PCR 음성확인서'를 검사 및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, A국가에서 검사 및 발급받은 'PCR 음성확인서'도 인정 가능

10.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, "PCR 음성확인서" 제출 의무가 있는지?

- 한국 입국이 아닌 경우 승객(환승객)의 경우 "PCR 음성확인서" 제출 불요

11. 영유아 경우에도 "PCR 음성확인서" 제출 의무가 있는지?

-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절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**만 6세 미만**(입국일 기준) 영·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
- *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
- 다만,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

- 3 -

12.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대상인지?

- A비자(A1: 외교, A2: 공무, A3: 협정) 소지자(외국인),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

13.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, “PCR 음성 확인서” 제출 의무가 있는지?

-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요건에 부합하는 “PCR 음성확인서”를 제출해야 함

14.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제외 대상은?

-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)
- 인도적(장례식 참석)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- 항공기 승무원
-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(본인입증책임)
-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(입국 당시 “대한민국 선원 소지자”에 한함)
- **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‘내국인’·‘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’·직계존비속(212~)**
- ※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15. 내국인이 “PCR 음성확인서”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경우 조치 사항

- PCR음성확인서 미소지(기준 미달 포함) 시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(‘21. 7. 15.~)

- 4 -

- 다만,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) 및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등 **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(14번 문항 참고)**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**항공기 탑승 가능**

- 국내 도착 후 제출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결과,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 5일(시설사용료* 60만원(12만원/일) 차부담) 후 **자가격리 2일** 조치(항만의 경우, 전 선원 하선금지)
-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「검역법」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
- ※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시설격리(비용 자부담, 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은 제외)

16. 외국인이 “PCR 음성확인서”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 조치사항?

-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, 국내 도착 후 기준미달이 확인된 경우 입국불허 조치(항만의 경우, 전 선원 하선금지)
- ‘국내 예방접종완료자’(외국인)의 경우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
- 다만, 현지 입국 불허 등으로,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귀국항공편 탑승 가능(본인 입증 책임)
- ※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의 경우 ‘해외 예방접종’ 여부와 관계없이,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외국인(장·단기체류 모두)은 입국금지
-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「검역법」 등에 따라 고발 조치, 강제출국 요청 가능

17.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, “PCR음성확인서” 검사 및 발급 기준(72시간, 1.20일부터 48시간)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?

- 운송수단의 장(항공사, 선사 등)이 기상악화,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(본인 입증 책임)

- 5 -